

2025년도 상반기 광주교통공사 공무원 대체인력풀(Pool) 모집공고

광주교통공사에서는 공무원 유고 발생시 인력지원을 위한 상반기 대체인력풀(Pool)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02월 06일
광주교통공사 사장

1 대체인력풀(Pool) 운영안내

- ◆ 공사 대체인력풀(Pool)에 선발된 자는 공무원의 출산휴가, 3주 이상 휴직·병가, 의원면직(면직일 ~ 공무원 채용전까지) 등으로 유고발생시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인력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풀(Pool)이며,
- ◆ 휴직자 및 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계약직)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 ◆ 대체인력 풀 등록(운영)기간 : '25.03.31. ~ '27.03.30.(2년) ※ 세부내용은 8. 근로조건 참조

2 모집개요

가. 선발 직종 및 인원 등

직종	선발예정인원(명)	채용시 고용형태	담당 직무수행내용
총계	29		
역무	15	기간제 대체근로자	역무(영업, 역사내 시설물 점검·확인, 안전관리 등)
미화	10	기간제 대체근로자	역사, 본사, 기지, 전동차 청소·방역
시설·경비	2	기간제 대체근로자	본사 및 기지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정비	2	기간제 대체근로자	전동차 정비

나. 선발방법 : 서류전형

다. 응시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65세 미만('61.01.01.~'07.12.31.출생자)
- 거주지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서류전형)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공고일 전일까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자
- 병역사항 : 제한없음
-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 여성의 경우『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함
- 결격사유 : 광주교통공사 계약직 근로자 관리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11.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12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가. 접수기간 : '25.02.20.(목) ~ '25.02.26.(수) 09:00~17:00

※ 접수장 정리 및 점심시간(11:3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광주교통공사 본사 4층 총무팀(광주 서구 상무대로 760)

※ 교통편 : 도시철도 이용시) 상무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약 100m(도보로 약 3분) 이동
 시내버스 이용시) 광주광역시 버스운행정보 홈페이지(<https://bus.gwangju.go.kr>) 참조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대리 방문 제출

※ 단체(3명 이상 일괄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응시표 포함) 1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사항 전체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자격증 앞·뒷면 사본 각 1부(해당자, 원본 지참)
 -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해당자 / 경력·재직 증명서에는 발급기관 직인 및 발급자 날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 수급기간 표기)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 / 보호기간 표기)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해당자)
 -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문화가족 해당자)
- ※ 응시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제3자가 식별 가능토록 자필로 해야 함
- ※ 제출서류상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2자리·뒷자리 7자리는 인식할 수 없도록 조치 후 제출
 (준고령·고령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에 출생년월일 표시)
- ※ 기타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안내 후 제출받을 예정임

4

서류전형 및 합격자 제출서류

가. 서류심사방법 : 응시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직무 관련 자격·경력 등)

나. 서류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직종별 서류심사 결과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각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결정
(단, 응시요건 부적격자는 점수부여 없이 불합격 처리)

구 분	평 정 요 소	배 점
1.응시자격	거주지 제한, 응시 연령 등 ※ 부적격의 경우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적·부
2.직무 관련 자격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 수 ※ 붙임 참조(자격증 점수표)	10점
3.직무 관련 경력	직무 관련 경력 기간 ※ 붙임 참조(경력인정 점수표)	20점
4.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① 지원동기(20점), ② 직무 이해도(20점), ③ 직무수행 의지(20점), ④ 조직융화 가능성(10점)	70점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순으로 결정(동 기준에도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평정요소 중 2.직무 관련 자격, 3.직무 관련 경력, 4.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의①,②,③,④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해당기준으로도 결정이 안 될 경우 광주광역시 장기 거주자 순으로 결정)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03.13.(목)

라. 제출 서류(서류전형 합격 발표 공고 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류전형 합격자용 첨부서식)
-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서류전형 합격자용 첨부서식)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류전형 합격자용 첨부서식)
- 서약서(서류전형 합격자용 첨부서식)

- 기 간 : '25.03.13.(목) ~ '25.03.14.(금) 10:00~16:30

※ 접수장 정리 및 점심시간(11:30~13:00) 제외

- 장 소 : 광주교통공사 본사 4층 총무팀(광주 서구 상무대로 760)

- 방 법 : 직접 또는 대리 방문 제출

※ 단체(3명 이상 일괄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5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적용대상 : 취업지원대상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된 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적용방법

-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가점 합격을 30% 상한제(4명 이상 채용분야(직무기준)만 가산점 적용,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해당내용을 기입하고 증빙서류 제출일시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준고령·고령자

- 적용대상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55세 이상)
- ※ 준고령자(50세 이상) 이상은 '75.02.26.이전 출생자임

- 적용방법

- 미화, 시설·경비 직종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
- 서류전형 평가점수 만점의 5% 점수 부여

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준고령·고령자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

라. 응시원서상 가산항목 기재 누락, 가점 비율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6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5.03.31.(월)

7

채용서류 반환

- 가. 응시자(근로계약 체결자 제외)의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응시자 본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동안 보관함
-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에는 소정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 청구양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청구방법 : 우편] (우 6199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북동) 광주교통사 총무팀
팩스] 062-604-8079
 - 반환방법 : 직접 방문수령(공인 신분증 지참) 또는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8

근로조건

- 가. 대체인력풀(Pool)에 선발된 자는 공무원의 출산휴가, 3주 이상 휴직·병가, 의원면직(면직일 ~ 공무원 채용전까지) 등으로 대체근로 투입사유 발생 시 서류전형 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수시 임용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풀(Pool)에 포함되어 재임용될 수 있으며 등록 기간(재임용 포함)은 '27.03.30.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선 순위자가 임용 연기를 요청한 경우 당시 대체인력풀(Pool)의 최하순위로 임용 순위를 변경하고 차 순위자를 임용함
- 다. 휴직자 등 대체근로 투입 사유 미발생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라. 임용일 및 대체근로 계약기간은 휴직자 등 발생 시점과 유고 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서류전형 점수 우선순위와 대체근로 계약기간의 장단은 비례하지 않음
- 마. 대체근로 계약기간 연장은 대체하는 휴직자 등의 유고 기간 연장 시에 가능하며 연장되는 대체근로 기간은 '27.03.30.을 초과할 수 없음
- 바. 대체하는 휴직자 등이 조기 복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가 가능함
- 사. 어느 한 특정 직종에 대체인력풀이 모두 투입된 후 추가 사유 발생 시 직종을 전환하여 투입할 수 있음

- 가.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응시요건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직종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접수시 무효처리,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검증 불가로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니, 발급가능여부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마.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선발 절차를 진행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비리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사. 일정은 응시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시 공사 홈페이지 (<http://www.grtc.co.kr>) 등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교통공사 총무팀(☎062-604-806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자격증 점수표

○ 적용 방식 : 공통 분야 자격증(1종) + 지원 분야 자격증(1종)

<단, '역무, 미화' 의 경우 공통 분야 자격증(2종) 적용 >

지원 분야	종 류	비 고
공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 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251 안전관리 분 야 중 하나에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응급구 조사 자격증 소지자	상위 등급 1개만 인정
시설·경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 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 201 전기 분야 중 하나에서 기능사 이상 자격 증 소지자	〃
정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 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146 건설기계운전, 161 기계제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163 철도, 167 금형·공작기계, 174 용접, 201 전기 분야 중 하나에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세부 자격사항	배 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응급구조사 1급	5점
산업기사, 응급구조사 2급	3점
기능사	1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 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통폐합 포함)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자격만 인정

국가기술훈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훈격의 종목

중직무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46 건설기계 운전 (11)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161 기계제작 (12)					천공기운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162 기계장비 정비·설치(31)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표면실장장비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자동화설비	자동화설비
				반도체설비보전	
				타워크레인설치·해체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163 철도(5)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중직무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67 금형·공작 기계(7)	금형	금형			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174 용접(7)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아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201 전기(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251 안전관리 (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소방설비(전기)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경력인정 점수표

○ 산정 방식 : 경력 기간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분 야	종 류	배 점
공통	안전관리 업무 수행 경력	· 3년 이상 : 20점 · 2년 이상 : 17점 · 1년 이상 : 14점
역무	역무 업무 수행 경력	
미화	미화 업무 수행 경력	
시설·경비	시설 및 경비 업무 수행 경력	
정비	철도차량 정비 업무 수행 경력	

※ 기본점수(무경력) 10점 적용

※ 경력증명서 상 발급기관 직인 및 담당자 날인(업무 내용 파악 불가 시 경력 불인정)